

『서울대학교 法學』 원고 심사규정

2006. 2. 28. 제정	2008. 2. 28. 개정
2008. 12. 12. 개정	2010. 12. 7. 개정
2012. 11. 30. 개정	2014. 8. 29. 개정
2015. 2. 27. 개정	2015. 8. 20. 개정
2016. 5. 20. 개정	2016. 11. 25. 개정
2017. 11. 17. 개정	2018. 11. 30. 개정
2019. 5. 17. 개정	2020. 2. 21. 개정
2020. 8. 21.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판례평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료, 서평, 기타 원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0. 개정>

제2조 (투고 자격 및 게재여부 심사)

- ① 법학지에 게재될 논문은 다음의 투고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게재결정을 얻어 법학지에 게재한다. <2019. 5. 17. 개정>
 1.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2.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3. 공인된 법률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연구논문
 4.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석·박사과정생의 연구논문.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요함 <2014. 8. 29. 단서 개정>
- ② 투고논문은 내용의 적정성과 학문적 수준에 관하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법학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외국인이나 발표한 논문으로 편집위원회가 필요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19. 5. 17. 개정>
- ③ 자료, 서평 등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015. 8. 20. 개정>

제3조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제출)

- ① 제2조에 규정된 투고논문은 당 법학연구소의 『서울대학교 법학』의 투고규

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② 제2조에 규정된 투고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③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에 앞서 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검사를 한다. <2016. 11. 25. 신설>

제3조의2 (적합성 심사)

-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합성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 1. 일반적인 학술적 논문형식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 2.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함이 명백한 경우
 - 3. 주제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4. 그밖에 적합성 심사만으로 게재불가 결정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 ② 편집위원장은 적합성 심사를 담당할 3인의 편집위원을 지정한다. <2016. 5. 20.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3인의 편집위원 전원이 투고논문이 심사를 받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적합성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필자는 그 이유를 밝혀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 ⑤ 편집위원회가 불복을 받아들이는 경우, 제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2015. 2. 27. 본조 신설>

제4조 (심사위원의 선임)

-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016. 11. 25. 개정>
- ② 심사위원 1인당 심사대상 투고논문은 당해 발간예정호당 5편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2020. 8. 21. 개정>

제5조 (심사기준)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 설정(창의성과 적실성)
2. 연구 관점의 참신성 및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3.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에의 기여도
4. 종합의견
5.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6조 (심사절차)

- ① 각 투고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된다.
- ② 심사위원은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평가서에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표제, 심사자의 성명과 소속,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심사개요 및 총평과 제7조 제3항의 결과를 표기한다.

제7조 (심사방법)

-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③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2. 11. 30>
 1. 게재가 : 경미한 보완 포함
 2. 수정 후 본호 게재
 3. 수정 후 차호 재심사 <2008. 12. 12. 개정>
 4. 게재불가
- ④ 각 심사결과가 본조 제3항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⑥ 필자가 심사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사위원들의 종합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여부 또는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⑦ 제3항 제3호의 결과를 통지받은 필자가 수정한 원고를 차차호까지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최초 투고논문에 대해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2017. 11. 17. 신설>
- ⑧ 편집위원회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8조 (심사결과로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② 각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9조 (논문게재)

-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들에게는 심사의견이 반영된 최종 원고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들에게는 연구윤리 서약서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법학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30; 2020. 2. 21>

제10조 (게재된 논문의 수정 및 게재취소)

- ① 데이터 또는 그 해석의 오류 등의 사유로 필자가 게재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허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 게재된 논문에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의심이 있거나, 이를 이유로 필자 스스로 논문의 게재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취소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게재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차호 법학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018. 11. 30. 본조 신설>

제11조 (개정)

본 심사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